대전일보 1992. 5. 15

獨공공노조 임금안 否決

賛·反투표서 대규모 罷業사태 직면 가능성

【본AP·聯=聯】독일은 14일 2차례의 금속노조 임금협상이 있어야 결렬된데 이어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마저 노조대표와 정부가 합의한 임금인상 타협안을 거부함으로써 또다시 대규모 파업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 공공부문 노조(OTV)는 이날 지난주 11일간 파업을 중단하면서 정부측과 합의했던 5.4% 임금인상안이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노조 대표들은 지난11일부터 3일간 실시된 찬반투표에서 공공부문 노조원 50만명 중 과반수에 못미치는 44.1%만이 임금인상안에 찬성표를 던져 對정부 타협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공공노조 규약은 OETV 노조집행부가 노조원들의 이같은 타협거부와 관계없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노조집행부가 조합원들의 다수의사를 무시하고 파업중단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독일금속노조는 전날인 13일 헤센州 勞-使간 임금협상이 이뤄다할 성과없이 결렬된데 이어 14일 삭소니州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州 협상도 임금인상폭을 둘러싼 勞使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됨으로써 파업돌입 가능성을 한층 고조시켰다.

블라디보스토크 탄약고 大폭발

수천家口 주민 대피

【모스크바이타르-타스AP·聯=聯】러시아 동부지방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태평양함대 소속의 한 대형 탄약고에서 14일 일련의 강력한 폭발사고가 발생, 큰 화재로 수천가구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장교 1명과 사병 2명이 부상했다.

憲法개정 위한 「民主연맹」결성 잠 롱

【발록=聯】잠롱 스리무앙前 팔랑당 당수는 14일 민주헌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민주연맹」을 결성했다.

사고가 일어나자 현지 방송은 블라디보스토크市 도심에서 약 10㎞ 떨어진 폭발발생지역 주민에게 긴급 대피하라고 권고했다.

「유럽單

獨·佛 平和유

開票所접근 차단 제지하고 있다.

유권자 일제히 비준소 집계 기관별로 득표 순위가 엇갈리고 이에 반발하는 세력의 개표소 난입으로 軍이 긴급 투입된 등 선거 정국이 점차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와 관련, 7명의 大權 후보중 득표 최하위에 머물러온 샬바노트 라우렐 부통령은 이날 패배를 시인하면서 산티아고에 대한 라몬 마르틴 하원의장도 패배를 선언하면서 정계 은퇴를 시사했다.

그러나 라모스의 역전에 대한 산티아고측 반발이 단호할뿐 아니라 개표 지연을 규탄하는 反정부 시위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자칫 총선 결과 자체가 정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당한 유효표의 23%가 개표된 결과 라모스가 1백22만8천여표로 산티아고에 3만9천여표 앞선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舊체제 복귀를 꿈꿔온 暴動재발 우려

【로스앤젤레스=聯】대부분의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은 몇년내에 다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당한 유효표의 23%가 개표된 결과 라모스가 1백22만8천여표로 산티아고에 3만9천여표 앞선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에이즈豫防 캠페인

한 동성연애옹호주창자인 대만의 치 치아웨이씨가 14일 콘돔으로 만든 옷을 걸친채 역도처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콘돔을 나눠주며 에이즈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만AP=聯】

콘돔 수집運動 전개

★獨녹색당 러聯 지원용

독일 녹색당은 14일 러시아의 몇자 부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또하나의 구호활동에 착수했는데 이번에 지원할 품목은 콘돔.

녹색당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여성들이 피임기구 부족으로 40세가 될때까지 평균 10차례의 낙태를 경험한다는 한 국제연구조사결과에 자극을 받아 러시아에 보낼 콘돔 수집 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 【킬獨逸AP=聯】

다하 그거 실문했다고 머피는 14일 美國의 TV 인기 토크쇼인 「도나휴」에 출연, 「난는 지금까지 아버지인 캐시 주교와 뉴욕의 한 별를 사무실에서 단 5분간 한번 만난 적이 있단며 「그는 당시 내 손도 한번 잡아주지 않는등 비정한 아버지였단고 토로했다. 【뉴욕AP=聯】

우리社會서 요구되는 法과 法曹人

宋相現

최근 갑자기 대한변호사협회가 法官의 非理를 大法院에 진정하여 문제를 삼다가 얼마후 흐지부지 넘어간 일이 있었다. 원래부터 뿌리가 같은 두 기관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내민들이 남보기格이라 환멸이 수습하여 덮어버릴듯한 감이 역력하다. 그 사건에 대하여 비록 구체적 진상이 밝혀진 것은 없으나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법의 기능이 무엇이고 법조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많은것을생각하게 한다.

첫째 현재의 일련화된 법조인 양성제도의 산물인 판검사 및 변호사는 사실상 강한 단체의식과 인간적 유대를 共有하는 友愛組合的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윤리적 측면에서 일어난 갖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가 항상 현저하게 낮게 마련이다. 한국에 와서 법조집단을 돕다가 귀국하는 외국인 변호사들은 한국의 변호사가 판검사의 방을 드나들거나 접대를 하고, 판검사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거나 잦은 연락을 하며 어울려다니는 사실에 경악을 하지만 우리 법조인들은 문화적, 역사적 필계를 내세워 의심스럽운 접촉과 실무관계를 합리화하기가 일쑤이다. 이와 같은 의식구조는 법집행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불편부당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법부와 비교해서 부패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사소한 의심쩍이란도 사법부가 이에 대하여 불가피하다 線的 權威를 떠받드는 수단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법학에 입각한 법학교육과 난해한 법적 도그마를 마스터한 것을 토대로 하여 소수의 엘리트 그룹을 재생산한는 사법시험제도와 획일적이고 소송실무의 형식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법연수원 훈련과정의 3박자가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 사회에서 법의 기능과 법조인의 역할을 많이 왜곡시키고 말았다. 그런데도 교육·시험 및 훈련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는 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법조계 내부에서의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따라 말만 무성한 감이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법률제도는 그 근본을 따지자면 애당초부터 일본과 프러시아의 法律文化의 家에 관한 일반이론에 의하여 그 모양새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영미국가의 法의 支配理想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日帝植民統治者는 물론 우리나라의 역대정권은 급속한 산업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프러시아식 국가주의 내지 반공을 앞세운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법률체서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수직관계에서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전통적 유교사상과도 잘 어울려서 우리나라 法律文化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였다.

그런한 틀 속에서 모든 법조인의 역할은 관료화의 길을 걷거나 우월한(?) 이웃나라의 법률문화의 정신적 외판원으로 전락한 감이있다면 지나친 관찰일까.

넷째 우리 법조계는 너무나 오랫동안 소송실무위주의 훈련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주로 소송실무에 초점을 맞춰 직 이외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없이 상대적으로 폐쇄된 사회속에서 철저한 합리성을 요구하는 외부압력도 개의치 아니한채 권위주의에 기초해서 문제를 해결하였던 배타적 엘리트 집단으로 安住해온 감이 없지 아니하다.

다섯째 제6공화국 이후의 민주화과정에서 국민이 모두 추구하는 목표를 인권보장, 부패와 범죄의 근절, 지방자치제의 도입, 언론의 자유, 대학의 자치, 선거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이라고 할 때 가장 우수한 단일 인력집단으로서 각계 각층의 선망의 대상인 법조인들이 과연 이같은 숭고한 목표의 민주적 가치를 통찰하여 그 달성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기여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법조직업을 일신상의 영달이나 생계안정의 수단이라고 보다는 법률을 통하여 공공봉사에 헌신하는 하나의 직종으로 보는 관념과 법조인이 국민에 대하여 지는 責任이 막중함을 좀더 확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필자도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이와같은 몇가지 단편적 진단을 함에 깊은 고뇌가 있을 수 없었고, 따라서 법리과 변호사 협회간에 잦시 논란되었던 문제는 단순히 법조계의 중요한 兩軸간의 사소한 불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법의 해석과 집행, 법조인의 훈련과 양성 및 나아가서는 법학교육과 시험제도 전반에 걸쳐서 짚어 있는 결함을 요구하는 중대사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느 나라에서든지 법조인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있어왔고, 비록 이같은 논의가 잠정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법조인들에게 맡겨진 제도적 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기술적 재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일방과 법조인의 윤리적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정의와 형평의 기본적 가치를 내세우는 일방이 대립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토대로 국제화, 자유화, 민주화의 사회변동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과거에의 수요공급의 창출로 인하여 느리게나마 법조계 전체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소수의 비리를 덮어버린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를 계기로 삼아 문제의 본질과 관련위한 파급효과를 똑바로 인식하여 법조인 양성과 활용을 위한 관련제도의 종합적 개혁에 지금 곧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올바른 확립을 위한 백년대계의 수립을 저버린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서울大 法大 교수>

숭耀 칼럼